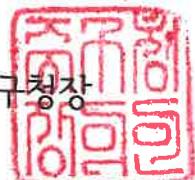


이 조례 및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구 주요 역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새로운 행정 수요를 반영한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체계

(개정 전) 5국 2담당관 28과 1의회사무과 1소(5과) 15동

(개정 후) 6국 1담당관 33과 1의회사무과 1소(5과) 15동

구 분		세부내역
본 청	1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책조정국	정책기획과, 재정기획과, 홍보소통과, 행정혁신과, 생활안전과
	시민친화국	동정부과, 평생학습과, 문화관광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생활복지친화국	복지기획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생활보장과, 교육지원과
	생활도시친화국	도심재생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시설과, 치수과, 토지관리과
	경제친화국	도심산업과, 전통시장과, 일자리지원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구의회	행정지원국	행정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가로환경과, 민원여권과
	1과	의회사무과
보건소	1소, 5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시민건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나. 개편사항

1) 국 신설(1국) : 정책조정국

2) 부서 신설(4과) : 정책기획과, 행정혁신과, 평생학습과, 생활보장과

3) 부서 명칭변경(5과)

- 생활복지친화국 : 복지지원과 → 복지기획과, 여성보육과 → 가족지원과,
교육아동청소년과 → 교육지원과
- 경제친화국 : 사회적경제과 → 일자리지원과
- 행정지원국 : 행정지원과 → 행정관리과

4) 부서의 국 이동 및 명칭변경(5과)

- 행정지원국 기획조정과 → 정책조정국 재정기획과 (이동, 명칭변경)
- 행정지원국 홍보전산과 → 정책조정국 홍보소통과 (이동, 명칭변경)
- 생활안전담당관 → 정책조정국 생활안전과 (이동, 명칭변경)
- 생활복지친화국 환경과 → 시민친화국 환경과 (이동)
- 시민친화국 민원여권과 → 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이동)

5) 국별 분장사무 신설 및 조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문의전화:3396-4512, FAX:3396-8603, 메일:myonga798@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①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보건소장, 동장 및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 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과별 분장사무와 동 주민센터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구 본청

제3조(국의 설치) ①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조정국,

시민친화국, 생활복지친화국, 생활도시친화국, 경제친화국 및 행정지원국
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② 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는 감사, 조사, 민원관리, 청렴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다.

제5조(정책조정국) ① 정책조정국에는 정책기획과, 재정기획과, 홍보소통과, 행정혁신과, 생활안전과를 둔다.

② 정책조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조정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총괄
2. 구정의 기획, 조정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 분석, 개발,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4. 지방의회, 법제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 배정, 교부에 관한 사항
6. 구정 주요시책의 보도 및 홍보소통에 관한 사항
7.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
8. 조직·정원관리, 조직진단,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9. 성과관리·평가, 공무원 평정 및 서열명부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
10. 재난안전대책 총괄, 관내 재난예방 및 피해저감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11. 생활안전, 안전교육, 안전문화, 민방위에 관한 사항

제6조(시민친화국) ① 시민친화국에는 동정부과, 평생학습과, 문화관광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및 환경과를 둔다.

② 시민친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친화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총괄
2. 동정부 추진을 위한 동행정체계 개편, 동행정 총괄, 선거, 주민등록, 자치회관 운영
3. 마을공동체 육성, 자원봉사, 사회단체 운영 지원
4.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및 지원
5. 생활체육 단체, 시설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 정책개발, 프로그램 지원·운영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기관·단체 간 네트워킹 구축사업에 관한 사항
8. 중구문화재단, 중구문화원에 관한 사항
9.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 확충, 시설개선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관광정책 및 관광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2.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
13. 청소행정, 일반폐기물, 재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
14.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청소대행업체 관리, 환경미화원 관리에 관한 사항
15. 쓰레기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16. 공원 및 녹지조성,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7. 가로수, 녹지대,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8. 대기, 수질, 토양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19. 연료의 안전관리 및 에너지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

제7조(생활복지친화국) ① 생활복지친화국에는 복지기획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생활보장과, 교육지원과를 둔다.

② 생활복지친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복지친화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총괄
2. 주민복지 총괄 기획에 관한 사항
3. 통합사례관리, 복지자원 관리·연계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
5. 어르신복지, 어르신 일자리, 어르신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 장애인 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숙인 보호, 자활근로, 자활주거에 관한 사항
8. 보육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9. 아동권리 증진에 관한 사업 총괄,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관리
10. 저출산 대책, 다문화지원에 관한 사항
11. 사회안전망 및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변동 관리에 관한 사항
12. 생계, 주거, 의료 급여 업무 총괄
13.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14. 미래인재육성 사업, 혁신교육사업 추진, 교육경비 총괄
15.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사업에 관한 사항
16. 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생활도시친화국) ① 생활도시친화국에는 도심재생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시설과, 치수과 및 토지관리과를 둔다.

② 생활도시친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도시친화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총괄
2.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주택행정, 공동주택 관리, 주택 재개발에 관한 사항
6.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에 관한 사항
7. 위법건축물 관리 및 주택 정비에 관한 사항
8. 영선, 건축허가, 착공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9. 공공디자인 정책 및 디자인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10. 도로 및 보도시설물, 가로등 및 보안등에 관한 사항
11. 하수도 시설 집행 및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12. 지하수 및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13. 지적행정, 토지관리,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14.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제9조(경제친화국) ① 경제친화국에는 도심산업과, 전통시장과, 일자리지원

과, 재무과, 세무1과 및 세무2과를 둔다.

② 경제친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친화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총괄
2. 봉제, 인쇄, 공구 등 도심산업 육성
3. 가격표시제, 통신판매 등에 관한 업무
4. 소상공인 지원, 부정경쟁방지 단속에 관한 사항
5. 전통시장 육성 및 지원, 시설현대화에 관한 사항
6.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 활성화, 마을기업 육성·관리,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8. 취업 정보 제공 및 일자리 관련 사업 총괄
9.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0. 물품관리, 계약, 지출 등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

11. 구 세입총괄에 관한 사항
12. 세외수입 총괄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 및 국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14.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제10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는 행정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가로환경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행성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지원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총괄
2. 총무, 인사에 관한 사항
3. 새올행정포털시스템, 인터넷 관리, 정보통신, CCTV 통신관제에 관한 사항
4. 교통행정, 교통시설, 운수지도, 자동차 정비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동차등록, 중기등록에 관한 사항
6. 주차시설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주차관리, 주차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8.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9.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10. 도로·지하도·하천 및 구거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11. 가로정비 및 도로시설물관리에 관한 사항
12. 문서, 관인, 보조문서,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13. 민원행정, 민원처리, 가족관계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12조(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보건소) ① 보건소에는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시민건강과, 건강관리과 및 의약과를 둔다.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정한 소관 사무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허가·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유해업소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14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 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2와 같다.

제15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직무)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생활 지원업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